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8월 31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9월 9일

제1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김 석 동

나. 제안이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 반환 기준 제시(안 제12조)

-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함께 표기한 사용료 반환의 기준을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부분과 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
-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3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 구미시의 행사 또는 시설물의 운영상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0퍼센트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
-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
-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안 제13조)
 -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삭제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144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민법」 제750조, 제763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최 명 호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15.06.04. 시행)에 따라 규정한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사용료 반환 기준과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적,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12조에서 구체적 반환 기준이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여, 구미시의 행사 또는 시설물의 운영상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10퍼센트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수정하였고,

-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당일 및 사용개시일 전 2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며,
- 이용시설 사용개시일 3일 전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 또한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구미낙동강체육공원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용료 반환 조항을 자체 정비하고, 상위법에 상충되는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